

제2호 청렴주의보 발령

-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주요 위반사례 -

□ '청렴주의보'란?

- 명절이나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청렴 위해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 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을 도모

사례1 : 공무원인 아내를 통한 인사 대가 금품 수수

① 지방공무원 A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 공무원 B를 통해 당시 인사계장이던 B의 남편 C에게 인사 청탁을 하였고, 이에 C는 A를 타 부서로 전출토록 인사 발령을 조치해줌. A는 이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B를 청사 로비로 불러내 고마움을 표시하며 제과류 포장 속에 상품권 50만원 (10만원권 5매)을 넣어 건넸고, B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수함.

⇒ 공직자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B와 C는 모두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이고, 공직자인 A가 인사청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사담당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위반임

사례2 : 택배로 배달된 명절 선물 수수

모 공직유관단체 경영기획팀장 A는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자, 그를 맞이한 딸이 '누가 옥돔세트를 명절선물로 택배로 보내와 상할까봐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고 말하여 다음날 확인해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甲연구원 B원장이 보낸 선물임을 알게 됨. A팀장은 처음에는 돌려주려 하였으나, B원장이 용역계약과는 상관없이 평소 팀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포장을 이미 뜯어 냉동실에 넣어둔 상태라 돌려주기 어렵다 판단하여 위 옥돔세트를 수수함

⇒ 본인의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수수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금품 수수 금지 위반임

사례3 : 지사체장의 공무원 대상 금품등 제공금지 위반

모 기초단체장 A군수와 소속 공무원들은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협의 및 위로·격려 명목으로 총 85회에 걸쳐 3천3백여 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상품권·한우세트·잿세트 등의 금품 등을 제공함

⇒ A군수와 부하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임

※ 제시된 사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